보호시설(제2조제1항제16호 관련)

1. 제1종 보호시설

- 가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[4)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 조물]
- 1) 「초・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2)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- 3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- 4)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- 5)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- 6)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
- 7) 「학원의 설립・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
- 8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49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)
- 9)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도서관
- 10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
- 11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 장업의 시설
- 12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 영관
- 13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
- 나. 사람을 수용하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과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 분의 연면적이 1천㎡ 이상인 것
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가목・나목・라목 및 같은 표 제28호에 따른 공연장・예식장・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
- 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
- 마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
- 2. 제2종 보호시설
 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 축물
 - 나. 사람을 수용하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과 「건축법 시행

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 분의 연면적이 100㎡ 이상 1천㎡ 미만인 것